

학부(과) 폐과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자원의 감소와 등록인원 격감에 따른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이라 한다)의 교육 효율성 제고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부(과) 폐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에 관한 학부(과)는 학칙 제3조의 설치학부(과)를 말한다.

제3조(학부(과)의 폐과의 정의) ① 4년간 연속하여 신입생 등록률이 모집정원의 50%미만 일 경우 및 2년간 신입생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해당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폐과 한다.

③ 폐과된 학부(과)의 학생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4조(폐과) 폐과란 학칙에 학과 편제인원이 없는 경우(편제정원“0”)를 말한다.

제5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학과(부) 폐과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과조치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폐과 이후의 소속 학부(과) 재적생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이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소속학부(과)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교원) 폐과에 따른 소속 교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정리한다.

① 유사학부(과)로 진출 및 전보

②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시간부여

③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기관 연수

④ 기타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신분정리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연수기간 및 처우) 제6조에 의한 연수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24조 4항에 의거하여 연수기간으로 하며 처우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제8조(교과목개설금지) 학부(과) 폐과 교원의 시간 확보를 위하여 타 학과에서 교육과정상 위배되는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없다.

제9조(편익제공) 학부(과) 폐과 교원이 타 대학 진출 및 기타 직장으로 전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과조교) 모집 중지된 폐과 학부(과)의 조교는 재학생이 존속하는 기간만 존속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